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권고

1960. 12. 14

프랑스 파리 제 11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권고

1960년 12월 14일

파리 제 11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196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11차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은 차별금지원칙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은 교육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교육상 차별은 동 선언에 단언한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간주하고**,

유네스코는 그 헌장 정신에 비추어 범세계적인 인권 존중원칙과 교육평등정신을 조장한다는 견지에서 국가간에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의가 있음을 **고려하고**,

따라서 유네스코는 각국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교육상 차별의 유형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교육상 기회평등 및 대우평등의 원칙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육상 차별의 여러 가지 상이한 측면에 관한 제안을 본 회의의 의제 17.1.4으로 **상정하고**, 이 문제를 각 회원국에 권고함과 동시에 유엔총회에 의제로 제기할 것을 제 10차 총회에서 **결정한 바**,

1960년 12월 14일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각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지역내에서 본 권고에 설정되어 있는 제 원칙에 효력을 주는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의 제 원칙을 적용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다.

I.

1. 본 권고의 목적상 '차별'이란 말에는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혹은 의사차이에 의거한 모든 차별, 배타주의, 제한 혹은 편중주의가 포함되며, 또한 교육상 대우의 평등원칙을 해치거나 무력화시킬 목적과 영향을 미치는 사상, 국적 또는 사회적 요인, 경제조건 또는 출신성분을 이유로 한 일체의 차별이 포함된다. 특히:

(가) 어떤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어떤 유형의 교육 어떤 수준의 교육에 접근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나) 어떤 특정인과 집단에게 표준 이하의 교육만을 제한하는 것;

(다) 본 권고의 제II의 규정에 따른 분리교육제 또는 기관을 특정인과 집단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것;

(라) 인간존중 원칙에 위배되는 제 조건을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게 과하는 것.

2. 본 권고의 목적상 '교육'이란 말은 모든 유형 및 모든 수준의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교육에 접근, 교육의 질과 기준 및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조건 등이 포함된다.

II

국가에서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상태는 본 권고 제 1항이 뜻하는 범위 안의 차별이 성립된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가) 남녀학생에 대하여 개별적 교육제도 혹은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 다만, 이들 제도 혹은 기관이 동등한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며, 같은 질의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유자격 교사진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일 또는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나) 종교상 및 언어상의 이유로 학생의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희망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별개 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다만, 만약 그러한 교육기관에 대한참가 혹은 입학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리고 만약 제공되고 있는 교육내용이 당국이 설정하고 승인한 제 기준에 합치될 때;

(다) 사립교육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만약에 당 기관의 목적이 어떤 집단의 배척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공당국이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보충적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때, 또한 그 기관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며,

그리고 실시되고 있는 교육이 주무당국에 의하여 마련되었고 승인된 기준에 합치되면 특히 동일한 수준의 교육일 때.

III

본 권고가 의미하는 범위내의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원각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교육상 차별규정이 내포되어 있는 여하한 법령이나 행정지시를 폐기해야 하며, 또 어떤 행정명령도 정지해야 한다;

(나) 필요한 지역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학생의 입학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입법조치에 의하여 보증해야 한다;

(다) 수업료문제 및 장학금 지급 또는 다른 형태의 학생에 대한 보조 그리고 필요 한 허가 및 외국에서의 연구계속에 대한 필요한 편의제공 등 신상필별 또는 필요에 근거한 것 이외에는 국민 사이에 당국에 의한 여하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

(라) 학생들이 특수한 집단에 소속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 의거한 여하한 제약이나 편중은 용납되지 않는다. 교육기관에 대한 당국에 의한 어떠한 보조금 형식을 빌린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

(마)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교육상 기회를 부여한다.

IV

회원 각국은 더욱더 국가정책을 형성,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 국가정책은 환경과 국가적 활용에 알맞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상 문제에 있어서의 기회평등원칙과 대우상 평등원칙을 증진시켜야 한다:

(가) 초등교육을 무상 의무교육화 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일반 적으로 이용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입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즉, 고등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에 출석하는 의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나) 교육의 기준은, 같은 수준의 모든 공교육기관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것과 그리고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질적 조건도 역시 동등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다)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초등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의 교육과 초등교육과정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사람들의 교육을 조장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능력에 의거한 교육의 계속이 장려되어야 한다;

(라) 교원을 위한 훈련을 차별 없이 마련할 것.

V

회원 각국은 다음 원칙의 적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가) 교육은 인간개성의 충실한 발전에,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을 위해 지향되어야 한다. 즉, 교육은 모든 국민, 종족 또는 종교 사이에 이해 관용과 우정을 증진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제활용을 조장시킨다;

(나) 양친 및 그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후견인의 자유, 즉 첫째로는 공공당국이 유지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이어서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하며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최저한의 교육수준에 적합한 것을 자녀를 위해 선택하는 자유. 그리고 둘째로 학생에 대한 종교적 도덕상의 교육에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용이 그 국가의 관례를 따라야 하며, 어떠한 개인 혹은 집단이 그들의 양심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이 보증되어야 한다;

(다) 한 국가내의 소수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선 학교의 운영과 각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거하여 그들 자신의 언어의 사용과 교육도 포함된다. 다만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 (1) 이 권리는 이 소수민족의 구성으로 인하여 전체사회의 문화 및 언어의 이해를 방해하는 형식으로, 또는 그 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주권을 침해하는 형식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 (2) 교육의 기준은 주무당국에 의하여 설정, 승인된 기준 이하이어서는 안된다;
- (3) 그러한 학교에 대한 입학은 자유의사에 따라야 한다.

VI

회원 각국은 본 권고의 적용에 있어서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되는 교육상 차별금지조치, 교육상 기회평등 그리고 대우평등원칙보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에 대한 권고에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VII

회원 각국은 규정된 일자에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이 권고를 적용하기 위해 취한 그리고 채택한 입법조치 및 행정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선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정책의 정립 및 개발뿐만 아니라 성과와 그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 당면했던 애로요인도 포함된다.

전기 사항은 1960년 12월 15일 폐막된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총회에서 제11차 회의 기간에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채택 선포된 권고의 정본이다.